**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2. 8. 30.)**에서 의결된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8월 31일

**고흥군의회의장 이 재 학**

규칙 제2022-48호

#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에 제4항 및 제5항, 제6항,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할 때 예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2명 이내의 자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자문 위원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
2. 각종 기금회계
3. 예산안 첨부 서류

⑥ 자문 위원의 위촉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 20일 이내로 한다.

다만, 위원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⑦ 자문 위원에 대해선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71조(예산안 심의) | 제71조(예산안 심의) |
| ① ~ ③ (생 략) |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④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할 때 예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2명 이내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|
| <신 설> | ⑤ 제4항의 자문 위원의 자문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.<br>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<br>2. 각종 기금회계<br>3. 예산안 첨부 서류 |
| <신 설> | ⑥ 자문 위원의 위촉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위원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|
| <신 설> | ⑦ 자문 위원에 대해선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 |